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11. .
제 안 자 : 남 양 주 시 장

1. 제안이유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지역 화학사고대응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촉직 위원 임기 변경(안 제6조)
- 제2항 위원장(환경국장 → 부시장)
- 제4항 위촉직 위원 임기(2년 → 3년)

나.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신설(안 제16조)
- 시장은 주요취급시설 설치·운영자의 주민에 대한 고지 지원이 가능하며,
-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음.

다.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포함 내용 신설(안 제17조제2항)
-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등

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 등 신설(안 제18조)
- 시장은 대피장소 등을 변경 시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 비상대응분야 검토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과 제출해야함.

마.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 신설(안 제20조)

- 시장은 배출저감계획서 점검을 위해 사업장 출입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 사업장 출입 시 위원회 위원이나 전문가를 입회시킬 수 있음.

바.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용어 정비 (안 제4조, 제17조 등)

-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 제17조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나. 입법예고

1) 예고기간: 2021. 9. 30. ~ 2021. 10. 22.(22일간)

2) 예고결과: 의견없음

다. 부서협의

1) 협의기간: 2021. 9. 17. ~ 2021. 9. 23.(7일간)

2)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여성아동과): 이행 완료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원안 동의
- 규제심사 대상 여부(법무담당관): 규제심사 대상 아님

라. 관계법령: 화학물질관리법

마. 도 관련부서: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

남양주시조례 제 호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관리시행계획”을 각각 “안전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제17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방안

제4조제3항 본문 중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안전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경기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경찰관서”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경기도지사, 한강유역환경청장, 관할 소방서장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7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제20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행ㆍ점검

4. 제21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제6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안전관, 기후에너지과장, 수도과장”을 “재난ㆍ안전관리 담당 부서장, 화학사고 담당 부서장, 화학물질 취급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전문가”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2. 관할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관할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0조제2항 중 “1회”를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7조를 제19조로 하며,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7조까

지로 하고, 제12조, 제18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 등) ① 시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 중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계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20조(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 ① 시장은 법 제11조2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할 때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가를 입회시킬 수 있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2항 중 "날인하여"를 "날인을 받아"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안전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법 제42조제1항"을 "법 제23조의3"으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지역주민에 대한 고지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의 제목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지역화학

사고대응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을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상계획”을 “사고대응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8.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9.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제17조(종전의 제16조) 제2항제10호(종전의 제7호) 중 “정한”을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상계획”을 “사고대응계획”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22조(종전의 제1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ㆍ과		기후에너지과
입안자	관·과장 직위ㆍ성명	기후에너지과장 김 양 균
	담당ㆍ팀장 직위ㆍ성명	대기환경팀장 양 인 수
	담 당 자 성명ㆍ전화	김 다 은 (031-590-476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안전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시행계획은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2. 제16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4. (생 략) <신 설> 5.·6. (생 략)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계획----------. ② 안전관리계획----------.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3.·4. (현행과 같음)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방안 6.·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의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남양주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 안전관리계획 ----------. ----------.
④ 시장은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경기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경기도지사, 한강유역환경청장, 관할 소방서장 및 관할 경찰서장 ----------.
제5조(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화학물질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
1.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변경	1.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2. 제16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변경	2. 제17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변경

<신 설>	3. 제20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점검
<신 설>	4. 제21조에 따른 교육·훈련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부시장----------.
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안전관, 기후에너지과장, 수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 재난·안전관리 담당 부서장, 화학사고 담당 부서장, 화학물질 취급 담당 부서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찰관서 화학물질 담당부서장	2. 관할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소방관서 화학물질 담당부서장	3. 관할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5. ----------- 사람
6.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6. ----------- 사람

7. (생 략)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생 략) <신 설> <신 설>	7. (현행과 같음) ④ ---------- 3년----------.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1회 이상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날인을 받아 ----------.
제13조 · 제14조 (생 략)	제14조 · 제15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제1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시장은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매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생 략)	제16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 안전관리계획----------. 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의3-------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
<신 설>	④ 시장은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지역주민에 대한 고지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제17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

이상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
②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신 설>	8.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신 설>	9.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이 정한 사항	10. ---------- 정하는 ----------
③ 시장은 비상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사고대응계획----------.
<신 설>	제18조(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 등) ① 시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 중 주민 경보 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7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신 설>	제20조(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 ① 시장은 법 제11조2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할 때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가를 입회시킬 수 있다.
제18조(교육·훈련 등) ①·② (생 략) <신 설>	제21조(교육·훈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9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및 화	제22조(재정 지원) ----------

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제20조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붙임1 입법예고 결과

- 남양주 GREEN으로 달린다 -

남 양 주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1. 기후에너지과-45633(2021.09.30.)호와 관련입니다.

2.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의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09.30.(목) ~ 2021.10.22.(금) / (22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게시판
라.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마. 향후계획 : 조례안 발의 및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등 입법절차 이행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주무관 대기환경팀장 기후에너지과장 환경국장 전결 2021. 10. 25.
협조자 법무행정팀장 법무담당관
시행 기후에너지과-50329 접수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 (금곡동) / https://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767 팩스번호 031-590-8274 / rlaekdms09@korea.kr / 비공개(5)

붙임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동 조례 개정 후에도 세출 및 세입의 증감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사항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 환경국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결과

- 남양주 GREEN으로 달린다 -

남 양 주 시

수신 기후에너지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1A경기남양075)

1. 기후에너지과-44173(2021.09.1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여 성 아 동 과 장

주무관 여성정책팀장 여성아동과장 전결 2021. 9. 23.

협조자

시행 여성아동과-23736 (2021. 9. 23.) 접수 기후에너지과-44584 (2021. 9. 23.)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남양주시청 제1청사)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491 팩스번호 031-590-2269 / kwonps@korea.kr / 비공개(5)

붙임4 부패영향평가 결과

- 남양주 GREEN으로 달린다 -

남 양 주 시

수신 기후에너지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2021-075)

기후에너지과-44167(2021.9.16.)호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여부
■ 평 가 결 과 : 원안동의

※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남양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10조(재평가 절차)에 따라 **3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칙 제11조(평가결과의 반영)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감 사 관

주무관 청렴윤리팀장 감사관 전결 2021. 9. 17.

조자

행 감사관-10359 (2021. 9. 17.) 접수 기후에너지과-44468 (2021. 9. 23.)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감사관 (금곡동) / http://www.nyj.go.kr

화번호 031-590-4719 팩스번호 031-590-5847 / zmxncbv3@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1-남양주-075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이인섭
입 안 부 서	기후에너지과	입안담당자 직급 및 성명	환경7급 김다은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1. 9. 17.		
통 보 내 역	**원 안 동 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2021년 9월 17일

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

(담당자 / 연락처 : 이인섭 / 031-590-4719)

기후에너지과장 귀하

붙임5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 남양주 GREEN으로 달린다 -

남 양 주 시

수신 기후에너지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회신(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1. 기후에너지과-44306(2021. 9. 17.)호와 관련입니다.
2.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결과, 행정규제(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남 양 주 시 장

주무관 적극행정팀장 법무행정팀장 대결 2021. 9. 24. 법무담당관 전결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915 (2021. 9. 24.) 접수 기후에너지과-44845 (2021. 9. 27.)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제1청사 (금곡동) / https://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7320 팩스번호 0315901997 / chc02@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 -

붙임6 관계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 ·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2.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3.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내 사업장 또는 화학사고 대응 관계기관이 비상대응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③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9호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붙임7 현행조례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0.07.16 조례 제1757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양주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로부터 남양주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안전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시행계획은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제16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제공
4.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 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남양주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경기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16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7. 16.>

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안전관, 기후에너지과장, 수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7. 16.>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경찰관서 화학물질 담당부서장

3. 소방관서 화학물질 담당부서장
4.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6.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7.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2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등)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위원 위촉 시 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시장은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매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6조(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시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시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이 정한 사항

③ 시장은 비상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시민고지)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훈련 등)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화학사고 예방·안전 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757호, 2020. 7. 16.>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기획관, 환경정책과장”을 “시민안전관, 기후에너지과장”으로 한다.

<24>부터 <29>까지 생략